

의안번호	2211999
의 퇴 인	박정하의원
회 답 일	2025. 8. 8.
추계번호	25C3287

스포츠지능정보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제정안에 따라 스포츠지능정보화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스포츠정보시스템의 재난·재해복구체계 구축 및 운영 등을 위한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23억 3,000만원(연평균 4억 6,600만원) 이상으로 추계됨
 -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임
 - 이에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가능성이 있음

[표 1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연평균
기본계획 수립 (안 제6조)	220	—	—	110	—	330	66
스포츠정보시스템의 재난·재해복구체계 구축 및 운영 (안 제13조)	—	—	—	1,000	1,000	2,000	400
합계	220	—	—	1,110	1,000	2,330	466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6조(스포츠지능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)	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지능정보화의 효율적·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스포츠지능정보화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3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함	의무규정
2	안 제9조(스포츠지능정보화책임관)	문화체육관광부장관,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체육단체등의 장은 해당 기관의 스포츠지능정보화 시책의 수립·시행과 스포츠지능정보화 사업 조정에	의무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		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(이하 “스포츠지능정보화책임관”이라 한다)을 두고(제1항),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하여야 함(제2항) 1. 스포츠지능정보화 정책 및 사업 총괄조정, 지원 및 평가 2. 스포츠행정 전산화 업무의 지원 3. 소속 직원의 지능정보화역량 강화 지원 4. 정보격차 해소와 정보와 역기능 방지 5. 정보자원의 체계적 관리와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6. 그 밖에 스포츠지능정보화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	
3	안 제10조(전문기관의 지정 등)	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단체등의 스포츠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한 지능정보화기술의 도입·활용이나 스포츠정보시스템 구축·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(이하 “전문기관”이라 한다)을 지정할 수 있음(제1항)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문기관이 제1항의 사항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(제3항)	재량규정
4	안 제11조(스포츠정보시스템의 통합관리)	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정보자원의 공동활용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각 체육단체등에서 구축·운영하고 있는 스포츠정보시스템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음	재량규정
5	안 제12조(스포츠정보자원의 운용실태 조사 등)	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단체등에 대한 스포츠정보자원 운용실태를 조사 및 평가하고, 그 결과를 정책 및 사업에 반영할 수 있음	재량규정
6	안 제13조(스포츠정보시스템의 재난·재해복구체계 구축 및 운영)	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재난에 대비하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스포츠정보시스템의 재난·재해복구체계를 구축·운영하여야 함	의무규정
7	안 제14조(스포츠지능정보화 지표의 개발 및 진단 등)	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단체등의 스포츠지능정보화 현황 파악을 위하여 관련 지표를 개발·보급·활용할 수 있음	재량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6조(스포츠지능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)	○	
2	안 제9조(스포츠지능정보화책임관)	×	- 유사 업무 담당관 보유 (문화체육관광부, 지방자치단체) - 체육단체 범위 미설정
3	안 제10조(전문기관의 지정 등)	×	- 조직규모 예측불가능
4	안 제11조(스포츠정보시스템의 통합관리)	×	- 체육단체 범위 미설정
5	안 제12조(스포츠정보자원의 운용실태조사 등)	×	- 체육단체 범위 미설정
6	안 제13조(스포츠정보시스템의 재난·재해복구체계 구축 및 운영)	○	
7	안 제14조(스포츠지능정보화 지표의 개발 및 진단 등)	×	- 체육단체 범위 미설정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제정안의 일부 조항은 스포츠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체육단체등에 대한 범위 설정이 필요하며 현시점에서 해당 범위 등을 알 수 없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-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정안 부칙과 법률안 심사·의결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스포츠지능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(안 제6조)

- 안 제6조에 따라 3년마다 스포츠지능정보화의 효율적·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정책연구비 등 추가재정소요 발생 예상
- 기본계획은 제정안 시행 첫해에 수립하는 것으로 가정
-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제1차 정책연구비는 2.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, 제2차 이후부터는 소요 예산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
 - 문화체육관광부는 제1차 문화디지털혁신 기본계획('23~'25년) 수립을 위하여 2억 2,000만원을 편성하였음

[표 2]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 계
기본계획 수립 (안 제6조)	220	-	-	110	-	33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나. 스포츠정보시스템의 재난·재해복구체계 구축 및 운영(안 제13조)

-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재난에 대비하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스포츠정보시스템의 재난·재해복구체계를 구축·운영하도록 하고 있어, 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스포츠정보시스템 재난·재해복구체계 구축은 2년에 걸쳐 이루어지되, 스포츠정보시스템의 통합관리 체계 구축(2029년 예정) 다음 해부터 구축이 시작되는 것으로 가정함
 -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매년 10억원, 2년간 총 2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
 - 서울시는 데이터센터 재해복구시스템 환경 구축을 위해 2023년도에 21억 4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

[표 3] 스포츠정보시스템의 재난·재해복구체계 구축 및 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 계
스포츠정보시스템의 재난·재해복구체계 구축 및 운영 (안 제13조)	-	-	-	1,000	1,000	2,00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,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
-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,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이제정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제정	02-6788-3739	jejeong2@na.go.kr